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3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08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redacted]

피 고 1.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3. [redacted]군수

4. [redacted]시장

[redacted]

5.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3. 8.

판 결 선 고 2019. 4. 5.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3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0.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D(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를 설정하고,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관리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그 당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된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사건 투자신탁은 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2. 6. 28. [redacted]구 E 토지, F 토지에 있는 건물, [redacted]시 [redacted]구 G 외 15필지 총 68,926㎡ 및 그 지상 건물, [redacted]북도 [redacted]군 H 외 16필지 총 75,098㎡ 및 그 지상 건물, [redacted]시 I 외 20필지 총 48,734㎡ 및 그 지상 건물, [redacted]시 J 공장용지 66,110.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의 세액을 감면받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3

세목	과세물건 별(소재지로 구분) 감면 세액(원)				
	[redacted]구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군	[redacted]	[redacted]시
취득세	294,512,120	212,988,560	245,643,080	260,400,300	759,396,240
농어촌특별세	14,725,600	10,649,410	12,282,140	13,020,010	37,969,810
지방교육세	29,451,210	21,298,840	24,564,300	26,040,030	75,939,620
합계	**338,688,930**	**244,936,810**	**282,489,520**	**299,460,340**	**873,305,670**

라. B은 2012. 6. 27.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에게 구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신탁에 관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2. 7. 10. 등록이 완료되었다.

마.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구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처분 목록 기재 일자에 같은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모두 기각되었다.

구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처분청으로 구분)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군수	[redacted]시장	[redacted]시장
결정행정청	[redacted]광역시장	[redacted]북도지사	[redacted]북도지사	[redacted]북도지사	[redacted]남도지사
이의신청일	2014. 11. 27.	2014. 10. 23.	2014. 10. 17.	2014. 10. 28.	2014. 11. 20.
결정일	2015. 2. 13.	2014. 12. 26.	2014. 12. 26.	2014. 12. 9.	2015. 1. 15.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3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을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감면규정의 내용과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 관행에도 반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이 감면받은 세금보다 많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사건 감면규정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제182조 제1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3

2)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제도의 취지와 법적 효력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자본시장법이 등록제도를 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려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인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 ③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 · 설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였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등록신청이 수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05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3

재판장 판사 김예영

판사 임진수

판사 강태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3

처분 목록

순번	처분청 (피고들)	처분일자	부과고지 세액(단위: 원)			처분 자료 (갑호증)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1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10]	2014. 11. 12.	419,286,610	18,153,710	36,307,450	5-2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 8. 20.	301,591,790	12,949,690	28,029,280	5-3
3	[redacted]군수	2014. 8. 18.	347,830,590	14,935,080	32,326,600	5-4
4	[redacted]시장	2014. 8. 11.	370,367,340	15,914,350	34,432,720	5-5
5	[redacted]시장	2014. 11. 4.	1,092,847,120	47,048,390	101,690,740	5-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3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6. 신탁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3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 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 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3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3

2. 제18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82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운용보수, 판매수수료·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 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3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 제3항 관련)

59.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여부 결정, 신청인에 대한 문서 통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 기재 및 등록내용의 공고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록(법 제27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끝.